

공 시 송 달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4일
금융위원회

1. 공시송달 대상자

대상자	주민등록번호	주 소*
정성민	620217-1××××××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10, ○동 ○호(가좌동, 가좌마을5단지아파트)

* 조사 당시 주소임

2. 서류의 명칭 :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

3. 서류의 내용 :

1) 대상자 및 처분내용

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 (과태료)
정성민	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449조	25백만원

2)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문을 공시송달하였습니다(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33호).

3) 귀하가 의견제출기한(2016.2.26.)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에 따라 위 1)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다만, 귀하가 현 주소 고지를 거부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귀하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,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6. 3. 30.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)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2016. 5. 17.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5)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4조에 따른 감치

6)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(02-2156-9878)로,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(02-2156-9574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